

#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2. 31.

□ 사 업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협약 당사자

- 위탁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수탁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 운영에 관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상남도교육청의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에 의거, 동 사업을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제2조(사업내용 등)

- ①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수업 모델의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교육안 연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3. 경남지역 청소년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제공
  4.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 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제1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제2항의 세부 사업간 예산 조정 혹은 신규 사업 생성 시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사업 내 예산 조정 시에는 “수탁기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기관 간접비 제외). 다만, 정산 시에는 조정된 예산 내역에 의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3조(제출 사항)

- ①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기본 계획
  2.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 제4조(사업기간)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 제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 ① “위탁기관”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협약 체결 후 “수탁기관”에게 총 사업비 금50,000,000원(오천만원)을 송금한다.
- ② 본사업에서는 간접비는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수탁기관”은 제2조 제2항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예산 10%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위탁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 하며, 관계 법령 등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비 관리)

- ①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정산 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기관”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①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관계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본 사업을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위탁기관”에게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위탁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의 하에 처리 방안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협약 또는 사업의 변경)

- 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변경된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 중 인건비, 간접운영경비, 직접경비 간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위탁기관”에게 변경 내용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접경비 내의 세부내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에게 사업기간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의 승인에 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의 해약 등)

- 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탁자 및 수탁자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수탁기관”은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 받은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위탁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협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해석 및 효력)

- ① 본 협약에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다만, 협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업 기간 내 본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협약의 운영)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 및 호혜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직인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단, 공문에 본 협약서를 첨부하여 협약 체결 여부를 송부 및 회신할 경우 본 협약서에 직인 날인이 없더라도 협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2026년 5월 8일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서 명)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서 명)